

의안번호	제 761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발 의 자	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연월일	2017년 12월 5일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1
----------	-----

발의연월일 : 2017년 12월 5일
발 의 자 : 박한범, 최광옥, 연철흙,
박봉순, 이언구, 임병운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안 제2조)
-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 (안 제4조~제5조)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잘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세정과와 협의함
- 다. 입법예고 : 2017. 11. 21 ~ 11. 26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북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난연도 도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도세 등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자동차번호판영치·「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도본청은 4급, 시·군 및 사업소 등은 5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4. 시·군세에 병기되거나 부가되어 고지되는 도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가.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1
 - 나.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3
 - 다.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5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제5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회계감사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2. 포상금 지급기준
3.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공적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없이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탈루세액 등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된 경우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 ② 탈루세액 등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신고 받은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채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지급) ① 도지사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11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는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수 신 : 충청북도지사

참 조 :

발 신 : ○ ○ 시장·군수 (인)

○ ○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은닉 세 원				
	기 타				
제도개선 등					

- ※ 첨부 :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3. 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의결서 1부.
4. 기타 증빙자료 1부.

【별지 제2호 서식】

탈루세액등 제보 신고서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 제 보 자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제 보 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탈루세액등 제보 내용					
<p>20</p> <p>제보자 (인)</p> <p>○○시장·군수 귀하</p>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 탈루세액등 제보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뒷 쪽)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요령

- ①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루세액등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루세액등 포상금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 ② 2. '검토결과'의 '지급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기재
- ③ 2. '검토결과'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날을 기재
- ④ 3. '지급신청 관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시·군청 및 해당 소속부서를 기재
- ⑤ 「탈루세액등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4호 서식)를 함께 발송

(별지 제6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신고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은닉재산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8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년월 일	징수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확인 (담당)	특별 공적 (사유)	포상금지급	
	소속	직급 (해당 자에 한함)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 액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포상 금액	지급 일

【별지 제9호서식】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징수액	납 세 의 무 자			징 수 년월일	징수 확인 (담당)	포상금지급	
	소속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성명	생년 월일			포상 금액	지급 일

주)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